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47호 2018. 8. 13.(월)

조 례

-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기 타

- 시정알림판 ----- 19

회람							
----	--	--	--	--	--	--	--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7. 24.) 의결된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85호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청·동 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비 고
목포시청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동부로31번길 20(용당동)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백년대로 95-5(용당동)	
연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산정로 63번길 14-1(산정동)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양을로 144(산정동)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연산로 191(연산동)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원산로145번길 20(연산동)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마파지로 18-9(대성동)	
목원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자유로20번길 27(동명동)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자유로104번길 35(산정동)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수강로12번길 24(보광동2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유동로 19(서산동)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북향로81번길 6(죽교동)	
북향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고하대로 655(산정동)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용당로 335(용해동)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백년대로 189(용해동)	
상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상리로1번길 32(상동)	
하당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하당로 215(상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하당로 66(상동)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영산로 743(대양동)	
옥암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삼향천로 118(옥암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삼향천로 28(옥암동)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2(옥암동)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7. 24.) 의결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86호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 (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u>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u>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 ----- ----- <u>경우에는</u> ----- -----, ----- ----- -----.
1.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u><삭 제></u>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u><삭 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7. 24.) 의결된 목포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87호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본문 중 “30일전” 을 “60일 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략) 1. (생략) 2.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 ② (생략) ③ (생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 계획서 제출 및 개설계획 예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u>30일전</u> 까지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종류,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 계획서 제출 및 개설계획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60일 전</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7. 24.)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88호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m ² (12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100~300톤/일	30m ² (9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300~500톤/일	20m ² (6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m ² /톤 (3~4.5평)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m ² (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m ² (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m ² (100평)	-
	500톤/일 초과	500m ² (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익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u> ① <u>납부금액 중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그 택지 등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지 면적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시설의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u> 1. <u>소각시설의 경우 :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u> 2. <u>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u> <u>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35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u> 1. <u>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u>	<u>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u> <u>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u> 1. <u>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u> 2. <u>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u>

현행	개정안
<u>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u> <u>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이하를 절사한다.</u> <u>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u> <u>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u> <u>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이하를 절사한다.</u> <u>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 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은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목포시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u>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 중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 -- -----

현행	개정안
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생략) 2.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비 등 제반 건설비와 책임감리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하거나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 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 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별표1부터 별표3까지로 하며,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원가계산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현행	개정안
<u><신 설></u>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u><신 설></u>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④ ----- 위촉한다.

현행	개정안
<u>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u>환경관리과장</u>,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 3. (생략) ⑤·⑥ (생략) 제2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u>환경관리과장</u>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략) <u>제5장 보칙</u>	1. <u>자원순환과장</u>----- 2.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자원순환과장</u>-----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별표 1] 소각시설 시설기준(1일 200톤 처리규모) -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 입 공급설비	쓰레기 계량설비 쓰레기 및 대형쓰레기 투입문 쓰레기 크레인 대형쓰레기 파쇄기 쓰레기 반입자 및 진출입문 쓰레기 피트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 쓰레기 피트는 3일 이상 저장용량 - 쓰레기 계량설비 크레인은 2기 이상			
소각설비	소각로 보조버너 침출수 분사설비 쓰레기 공급 이송설비 유압장치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 1일 200톤 처리 - 강열감량 7% 이내 - 설계범위 1,700 ~ 3,300kcal/kg - 연소가스 출구온도 850℃이상			
연소가스 냉각설비	폐열보일러 고압 및 저압증기 복수기 응축수 처리설비 고압증기 분배설비 슈트 브로아 급수펌프, 순수 제조설비 청관제 주입설비 증기터빈 발전기 지역난방수 열교환설비 탈기시설 보충수 공급시설	- 연소가스 배출온도 200℃이하			
연소가스 처리설비	집진설비 반건식 반응탑 SCR 촉매시설 활성탄 흡착설비	오염물질 종 류			
		단 위	일평균 치	최고치	
		분 진	mg/Sm³	10	30
		황산화물	ppm	10	30
		염화수소	ppm	10	30
질산화물	ppm	30	80		
알데하이드	ppm	30	50		
다이옥신	ng-TEF/Sm³	-	0.1		
		기타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급배기 설 비	압입송풍기 2차공기 송풍기 유인 송풍기 덕트배관 및 부속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굴뚝	- 굴뚝높이 120m 이상			

구 분		소요면적	비 고
폐 기 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m(12평)/톤	1기 기준 4,000m(1,200평)이하
	100~300톤/일	30m(9평)/톤	1기 기준 4,000m(1,200평)이하
	300~500톤/일	20m(6평)/톤	1기 기준 4,000m(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m³/톤 (3~4.5평)	1기 기준 4,000m(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m(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m(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m(100평)	-
	500톤/일 초과	500m(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의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총부지면적=시설부지면적(가) + 주민편의시설면적(나) + 주변녹지대면적(다)

현 행			개 정 안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재처리 설 비	재피트 재반출 계량기 재크레인 재이송, 추출, 냉각장치	- 재피트 저장용량 5일분 이상 - 바닥재와 Fly ash 분리저장	
급배수 설 비	용수 저장조 및 고가탱크 급수펌프, 보충수 펌프 등 기기 냉각수 순환펌프 등 냉각탑 기타 배관 및 관련 장치	- 관련규정 및 KS규정에 의함	
폐수처리 설 비	유기계 폐수처리 시설 무기계 폐수처리 시설	- 배출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준용	
유틸리티	수전설비 상수도 인입 LNG인입 및 정압설비	- 관련법규에 의함	
기 타 설 비	압축공기 설비 구내 냉난방 설비 청소차량 전자동 세차설비 연료저장 및 공급설비(비상 발전기용) 화재방지 경보설비 등 소방설비		
전 기 설 비	수배전설비 비상 발전설비 및 비상전원 옥내외 조명설비 제어 전원 낙뢰 보호설비 TV 공시청 설비		
계장설비	분산제어 설비(DCS) 감시용 제어반 및 계기 프린터 폐쇄회로 카메라 및 모니터 기타 부대설비	- Mimic 반을 갖고 있는 감시용 제어용 - 중앙 콘트롤실에서 감시, 분석, 제어 정보 입출력 시스템 - 안전 인터록 장치	
건축설비	공장동 관리동 기타부속건물	- 쓰레기 차다장차림 보이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	
토 목 조경설비	조경설비 담장		

※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세부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 시설기준(1일 30톤 처리규모)
- 제7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	-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장 사용
발효설비	발효조 주조조 가스처리 설비 탄수소 폐수 처리설비(합기성 설비에 한함)	- 시설사양이 상이할 경우 필요 설비 가감한다.
후 처 리 설 비	선별기 이송설비 포장설비	- 이물질 배출설비 포함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주요코드를 백업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배전 설비 옥내외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도 관리동 구내 내안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	
토목조경 설 비	조경설비 담장	

※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세부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사료화) 시설기준(1일 30톤 처리규모)
- 제7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이물질제거시설)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	-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장 사용
발효설비	건조설비 교반설비 살균시설 발효시설 이송콘베이어	- 건식과 습식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사양으로 한다.
후 처 리 설 비	배출시설 시료공부시설 또는 포장설비 선별기(필요시)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주요코드를 백업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배전 설비 옥내외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도 관리동 구내 내안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	
조경설비	조경설비 담장	

※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세부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

[별표 2]

<삭 제>

[별표 3]

<삭 제>

시 정 알 림 판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 8. 16.(목)~10. 31.(수)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
-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방문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신체계측(키, 몸무게),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등



건강증진과 ☎ 061-270-3699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주민세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 납부기간 : 2018. 8. 16.(목)~8. 31.(금)
- 납부대상 : 2018. 8. 1. 현재 목포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
- 납부방법 : 현금(직접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등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폰뱅킹, 인터넷뱅킹)
-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 인출금기에 카드(통장)로 납부

세정과 ☎ 061-270-3466, 3448, 8454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 운영기간 : 2018. 9. 1.(토)~10. 31.(수) [2개월]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시간은 17:30까지) ※ 월요일 휴관
- 전시주제 : 오늘의 수묵 -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 장 소 : 전라남도 목포시(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군(운림산방) 일원
- 주요내용 : 현대수묵의 재창조(목포), 전통수묵의 재발견(진도), 수묵화교육·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사전예매기간 : 2018. 8. 31.(금)까지
 - 입장요금 : 보통권(10,000원→**8,000원**) ※ 성인(만19~64세) 쿠폰(3,000원) 지급
- 사전예매신청
 - 온라인 : 티켓링크 1588-7890(www.ticketlink.co.kr)
 - 오프라인 : FAX(061-280-5865)
 - ☞ 신청서식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홈페이지(<http://sumukbiennale.org>)
 - ※ Fax 또는 전자문서 신청 불가 시 전화 061-280-5885 신청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 ☎ 061-280-5879



시 정 알 림 판

목포체력인증센터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 운영기간 : 월~금(09:00~18:00) 토요일(09:00~17:00) ※ 매주 일, 공휴일 휴관
- 장 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 대 상 :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 어르신
- 참 가 비 : 무 료
- 참가방법 : 전화(061-278-0155) 또는 홈페이지(nfa.kspo.or.kr) 예약



목포체력인증센터 ☎ 061-278-015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혜택
 - 의원 진료 안내일 예약 서비스 및 1:1 맞춤 건강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영양교육 및 건강식이 체험 등
 - 65세이상 환자 月 3,500원 정액 지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 ※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목포시 소재 지정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로 한정
- 65세이상 합병증 예방 검사비 지원
- 참여방법 : 지정의원 방문 ⇨ 사업참여 동의서 작성 ⇨ 등록완료 ⇨ 다음 진료 예약일 확인 ⇨ 약처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원, 약국 현황은 목포시보건소 홈페이지(www.mokpo.go.kr/health) 참조

목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061-285-7988

시외버스타고 무안국제공항에서 편하게 여행을 떠나세요!

- 항공기 운항 안내
 - 국내선 : 무안⇄제주 무안출발 06:20, 06:40 / 제주출발 18:10, 20:50
 - 국제선 : 무안⇄오사카(주8회) 무안출발 10:00, 15:20 / 오사카출발 12:30, 18:30
 - 무안⇄기타쿠슈(주3회, 화·금·일) 무안출발 18:00 / 기타쿠슈 출발 19:40
 - 무안⇄다낭(주2회, 화·토) 무안출발 10:00 / 다낭 출발 13:20
 - 무안⇄방콕(주4회, 수·목·토·일) 무안출발 21:40 / 방콕 출발 02:00
 - 무안⇄상하이(주2회, 수·토) 무안출발 12:10 / 상하이 출발 08:45
- ※ 부정기 노선은 한국항공공사 무안지사 운영팀으로 문의(☎ 061-455-2312)
- 시외버스 운행 안내(목포⇄공항)
 - 목포터미널→청계→무안→무안국제공항 : 05:00/08:20/12:50(월·수·목·금·일)/18:30/19:50(수·금·일)/20:20
 - 무안국제공항→무안→청계→목포터미널 : 06:45/10:20/15:30(월·수·목·금·일)/20:00/20:50(수·금·일)/22:10
- ※ 운행 문의 : 목포터미널 ☎ 1544-6886

